

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

제정 2001. 11. 6

개정 2003. 1. 9

개정 2017. 4. 7

개정 2019. 3. 29

제 1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대학교간호대학 동창장학회(이하 본회라 한다) 정관 제 4조 제1호의 「장학금지급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장학생 구분) 장학금의 지급대상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특대장학금
2. 학기장학금
3. 지정장학금
4. 전대간호동문 자녀장학금
5. 학업 보조 장학금
6. 기타장학금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특대장학금이란 모교 입시 당시 대학수석 및 차석 합격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및 보조금을 말한다.
- ② 학기장학금이란 모교재학생(대학원생 및 교우자녀 포함)에 대하여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- ③ 지정장학금이란 전대간호대학동창회 산하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기금을 회사함으로써 회사한 단체 및 개인이 지정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.
- ④ 전대 간호대학 동문의 자녀장학생이란 전대간호대학동문자녀로 본 대학에 재학 중인 동문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.
- ⑤ 학업 보조 장학금이란 모교재학생 중 학업보조가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.
- ⑥ 기타장학금

제 2 장 장학금 지급

제 4 조 (장학금의 액수)

- ① 장학금은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단, 학업 보조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.
- ② 장학금 지급액수는 장학이사회에서 조정·결의한다.

제 5 조 (신청서 등)

-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1. 신청서
 - 2. 성적증명서
 - 3. 학장 추천서
 - 4. 동창회, 분회 등의 추천서
- ② 특대장학금은 전학기 성적표를 첨부하여 본회에 직접 신청한다.
- ③ 학기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간호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동문 자녀로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심사)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심사는 본회에 제출된 대상 범위 내에서 장학이사회가 매년
에 행한다. 다만, 장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장학금의 지급을 결의할 수 있다.

제 7 조 (장학생 선정기준)

- ① 학기장학생 및 동문자녀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1. 학기 장학생은 직전 학기성적과 직전 학기성적의 평균평점이 각각 B학점 이상임을 원칙으로 한다.
 - 2. 동문자녀일 경우에는 직전(전학기) 성적의 평균평점이 3.0(B학점)이상임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특수 장학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학기별 성적이 평균평점 3.0미만일 때에는 장학금과 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③ 동문자녀 중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제2장 7조 1항 2호 규정에 불구하고 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이사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 영

제 8 조 (장학금 지급 등)

- ① 본회의 이사장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기 등록 개시일까지 장학증서를 수여한다.
- ②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
- ③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학금을 회수한다.
- ④ 본 회의 장학금외의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는 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지정장학금)

- ① 제3조 제3항의 지정장학금은 장학금을 조성, 회사한 단체 또는 개인이 지정하는 학생에게 당해 회사자가 직접 선정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일정액의 장학금을 회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한 자가 관리, 운영을 본회에 위임할 때에는 그 취지를 살려 이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5천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회사한 경우에는 회사자의 호 또는 이름을 사용한 장학금 운영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장학위원회)

- ① 장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이사장이 겸한다.
- ② 장학위원은 장학회 이사가 겸한다.
- ③ 장학위원회의 의안은 재임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

제 11 조 (추천)

- ① 장학금 수혜자의 추천은 매년, 간호대학장에게 의뢰한다.
- ②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본 회 이사장 명의로 통보한다.

제 12 조 (모교와의 협조)

- ① 장학생이 선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게 통보한다.
- ② 모교의 학장은 장학위원회에 참석하여 학생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당연직 본회 장학위원이 된다.

제 13 조 (보칙)

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의 예에 준한다.

부 칙

제 14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 15 조 (경과규정) 제 2조 제1호의 특대장학생 제도는 당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다.